

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인제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
번호 682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김인제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신정호, 이영실, 김화숙, 이경선,
노식래, 김종무, 채인묵, 장상기,
문영민, 김혜련, 김태수, 이현찬
의원 (12명)

1. 제안이유

서울시는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,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건축문화제 개최, 건축상 선정,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추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건축문화사업의 정의,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, 관련위원회 설치,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축문화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, 성숙된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건축문화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, 서울특별시 건축상,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건축문화사업의 개최시기, 기본방향,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함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11조)
- 라. 건축문화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- 마.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,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3 ~ 14조)
- 바.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시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건축문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건축문화사업”이란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, 서울특별시 건축상,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문화행사를 말한다.

1. “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”란 서울의 도시공간과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건축문화 행사를 말한다.
2. “서울특별시 건축상”이란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에게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.
3. “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”이란 건축문화의 진흥 및 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4.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말한다.

제3조(기본방향) 건축문화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축문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
2. 국내외 다양한 건축문화축제와 교류 및 협력

3.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·민간기업·대학·관련단체 간 교류·협력 체계 구축

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조직·인력 및 예산확보를 통해 서울건축문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 (개최시기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제(이하 “서울건축문화제”라 한다)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상(이하 “서울시 건축상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시상하며, 서울시 건축상의 세부 운영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, 직접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(이하 “민관협력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으며, 민관협력사업은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추가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 2 장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건축문화사업의 운영 및 실행계획

2.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
 3. 서울시 건축상 공모계획
 4. 민관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2. 건축문화사업 업무담당 과장 및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3. 건축문화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기타 서울특별시장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

행위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 2.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 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
 4.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
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, 출석위원 과반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건축문화사업의 평가) ①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사업내용 및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건축문화사업과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건축문화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지원 및 운영

제13조(사업의 지원) ① 시장은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, 소요경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보조금의 교부, 정산, 감독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, 건축문화사업 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건축문화사업의 전문성·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·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건축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이번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(개최시기) 및 제5조(개최시기 등) 및 제13조(사업의 지원), 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및 제15조(수당과 여비), 제13조(건축문화사업의 평가) 등 에서 비용 발생
 - ※ 단, 같은 조례안 제5조(개최시기 등)의 경우, 해당사업을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
 - 같은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사업(붙임 참고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사업명	내 용	2019년 사업비
제5조(개최시기 등) 제13조(사업의 지원)	서울 건축문화제	건축문화축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, 건축문화 진흥도모	297,000
	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	건축계의 주요 화두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영세한 비영리 건축관련 단체와의 건축문화 활성화 협력 사업 추진	300,000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나. 추계결과 ≒ 5년 동안 98백만원으로, 연평균 20백만원임

- 건축문화사업의 평가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례(2018 「서울건축문화제」 사업 종합보고, 2018.12.18.)가 있어 나머지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소위원회로 대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운영하는 것을 전제
- 위원회 운영 횟수와 소요비용 등은 건축기획과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계함. 15명의 위원 중 내부위원은 2명으로 전제. 외부 위원 전체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반영
- 물가인상, 인건비 상승, 회의건수 증가 등은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비용(합계) ≍ 98백만원

- 총비용 =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운영 및 수당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0)	(2021)	(2022)	(2023)	(2024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위원회 운영 (제7조, 제15조)	19,500	19,500	19,500	19,500	19,500	97,500
	소계(b)	19,500	19,500	19,500	19,500	19,500	97,500
□ 총 비용(b-a)		19,500	19,500	19,500	19,500	19,500	97,500

○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운영비 = $\sum_{i=1}^5$ (연간 위원회 운영비용)_i

- 연간 위원회 운영비용 = 19,500천원

$$= 150\text{천원(참석수당)} \times 13\text{명} \times 10\text{회}$$

-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2명은 참석 수당 지급 비대상
-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 기준

※ 위원회 참석수당: 기본 100천원(2시간 이내), 초과 5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예산분석관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